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. 2. 14 선고 2019가단22502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1. A

2. B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양래, 김규진

변 론 종 결 2023. 1. 17.

판 결 선 고 2023. 2. 14.

주 문

1. 피고들과 C 사이에 별지 목록 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2018. 4. 3. 체결된 증여계약 및 피고 A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6. 14. 체결된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한다.
2. 피고들은 C에게 각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8. 4. 4. 접수 제4653호로 마친, 별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8. 4. 4. 접수 제491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피고 A는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18. 6. 15. 접수 제832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 사실

가. C의 증여세 채무 등

1)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. 3. 4.부터 2018. 4. 10.까지 C의 D회사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에 관하여 조사하였다. C은 2018. 7. 13. 증여세 약 42억 원을 고지 받았다.

2) C 등은 조세심판원에 위 증여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, 조세심판원은 2020. 7. 10. C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.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0. 7. 23. 위 재결 취지에 따라 당초 고지된 증여세를 약 28억 원 감액하여 1,396,664,496원(이하 ‘이 사건 증여세’라 한다)으로 경정 · 고지하였다.

나. 각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

1) 피고들은 C의 자녀들이다.

2) C은 세무조사를 받던 중인 2018. 4. 3. 피고들과 별지 목록 1,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/2 지분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, 2018. 4. 4. 피고들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3) C은 2018. 6. 14. 피고 A와 별지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(이하 위 2018. 4. 3.자 증여계약과 통틀어 ‘이 사건 각 증여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2018. 6. 15. 피고 A에게 주문 제3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‘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’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4) C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~7, 11~15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

- 1)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.
- 2)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부과제척기간의 도과,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, 증여재산평가의 위법 등으로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갑 제14,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C 등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세 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주장하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, 1심, 항소심, 상고심1)에서 모두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, 위 사실과 앞서 본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사해행위 여부

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은 C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 등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,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.

다. 취소 및 원상회복

따라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원상회복으로 C에게 피고들은 각 이 사건 1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, 피고 A는 이 사건 2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왕현

별지